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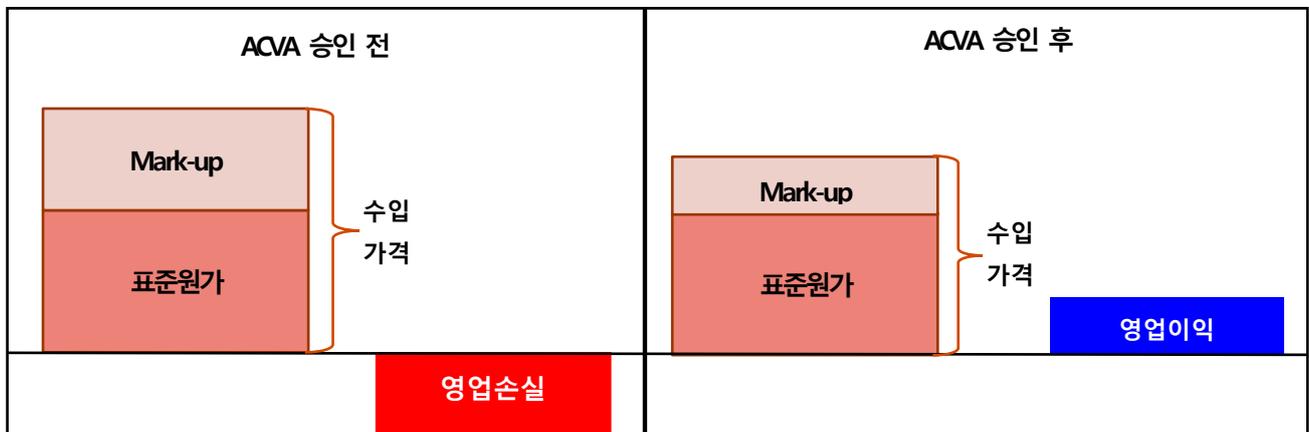
2021년 1월

### I. ACVA 성공사례 소개

피더블유씨 관세법인은 “국세 목적으로 인하 조정한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ACVA 승인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A사는 Cost Plus Method (원가가산법)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A사는 높은 수입가격으로 인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목표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수입가격에 적용하는 Mark-up 율을 인하 조정한 바 있습니다. A사는 인하된 수입가격을 향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 ACVA를 신청하여 2020년 12월 ACVA 결정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ACVA 승인에 따른 영업이익 변화]



A사는 수입가격을 구성하는 표준원가에 대한 계산 근거 소명, 벤치마킹 스테디를 통한 변경된 Mark-up 율의 적정성 소명, 수출자의 3자 판매가격 비교 등을 통해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성공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동 사례는 수입가격을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CVA 승인을 통해 과세 당국으로부터 수입가격을 인정 받아, 향후 회사의 비즈니스에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II. 2021 년 개정법령 소개

아래에서는 2021 년 1 월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주요 개정사항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 1. 관세법 주요 개정사항(2021. 1. 1 시행)

#### (1) 제 21 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관세법 제 21 조에서 원칙적인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 년이지만,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 절차 또는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는 그 결정, 판결,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 년간 결정 및 회신 등에 따라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관장이 원산지 조사를 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외국 세관 및 기관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회신 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관세 부과 기간을 명확히 하여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회신을 받은 날과 협정 등에 따른 회신 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 년

#### (2) 제 86 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따른 결과는 결과통지일로부터 3 년간 유효 하였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사전심사 결과 또는 재심사 결과는 제 87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1. 1. 12 시행)

코로나 19 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조치를 6 개월 연장하여 2021 년 6 월 30 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3.5% 세율이 유지되며, 100 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 Contacts

### Young-Mo Lee

Partner

+82-2-3781-3140

youngmo.lee@pwc.com

### Seong-Il Kwon

Executive Director

+82-2-3781-0178

seongil.kwon@pwc.com

### Jung-Hwan Paek

Director

+82-2-709-4089

jung-hwan.paek@pwc.com

PwC 관세법인 뉴스레터는 PwC 관세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PwC 관세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PwC 관세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